

# 해외정보

## 2001년 11월 9일 농림수산청 생산국 축산부 위생과 미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일시 수입정지조치에 관해서

1. 일본은, 미국주재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방역당국이 동부 코네티컷주 양계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금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혈청형(H7N2)이 확인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2. 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 중 특정의 혈청형(H5, H7과 고병원성)에 관해서는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금인플루엔자로써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법정전염병에 규정된대로 동물검역에 의한 국내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근거로 미국산 가금육 등에 관해서는 미방역당국이 청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수입 일시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관계기 관에 통보했다.

(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는 가금인플루엔자 중 고병원성의 것을 가금페스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고병원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혈청형이 H5와 H7 중 어느 쪽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혈청형이 H5 또는 H7이라면 저병원성이 라고 하더라도 장차 고병원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성에 관계없이 가금페스트로 정의내리고 있다.

### (별지)

####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출되는 가금육 등 취급방법

1.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 된 가금, 초생추, 종란, 계란은 수입정지의 대상이 된다.
2. 우모, 우모분의 수입은 동물검역소에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3. 지정 외의 조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토대로, 도착시 엄격한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 (1)과 (2)의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설명이 없는 것은 반송처리한다.
  - (1) 해당조류가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았다는 명백성을 입증 할 수 있을 것.
  - (2) 해당조류의 생산 및 사육지역(생산농장과 사육농장에서 적어도 반경 50km이내의 지역)에서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을 것.

또 개인에완용으로 지정된 것 외의 조류 수입에 관해서는 도착시 충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자에 대해 임상관찰 및 일정기간의 격리를 지도한다는 확인을 받고, 이것들을 문서화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C